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0217 |
|----------|-------|

발의연월일 : 2025. 4. 29.

발의자 : 박상웅 · 권성동 · 윤한홍

박준태 · 김도읍 · 박덕흠

강승규 · 이인선 · 곽규택

김미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 5제2항 신설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년”을 “1년(제2항에 따른 취득 중 「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

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   |
|---|---|
|   | <p><u>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
| <u>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u>       | <p><u>③ 제1항 및 제2항-----</u></p> <p>-----</p> <p>-----</p> <p>-----</p> <p>-----</p> <p>-----.</p>                                  |
| <p>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u>1년</u>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p>                         | <p>1. -----</p> <p>-----<u>1년(제2항에 따른 취득 중 「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위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u></p> <p>-----</p> <p>-----</p>                |
| <p>2. (생략)</p>  | <p>2. (현행과 같음)</p>  |
| <p><u>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u></p> | <p><u>④ -----</u></p> <p>-----</p> <p>-----<u>인구감소지역-----</u></p> <p>-----</p> <p>-----</p>                                       |

|   |              |
|---|--------------|
| 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
| ④ <u>제3항</u> 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之日起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⑤ <u>제4항</u> |